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저당권설정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. 〇〇지방법원 접수 제〇〇〇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. 계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0,000,000원, 이자 월 3%, 변제기 20○○. ○. ○.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저당권설정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만약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여 주는 내용의 가

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- 2.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*
- 3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

1. 갑 제5호증 차용증서

1. 갑 제6호증 등기필증

1. 갑 제7호증 인정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 대 ○○○m². 끝.

관할법원	· 사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www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- 5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		
	·송달료 : ○○○원(□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
불복절차 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	
및 기 7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